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839
----------	-------

발의연월일 : 2026. 1. 5.

발 의 자 : 김미애 · 송석준 · 김정재
안철수 · 박수민 · 김선교
박상웅 · 배준영 · 김종양
이인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등”)에서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취득세 감면율로는 인구감소지역등으로의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지역의 인구구조 개선에 중요한 청년·신혼부부에게는 더 높은 감면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등에서의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을 상향하며, 청년·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전액 감면함으로써 지역 인구유입과 정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5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의5제4항 본문 중 “소유한 자”를 “소유한 자(이하 이 조에서 “무주택자등”이라 한다)”로,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이 조에서 “인구감소지역등”이라 한다)”으로, “주택으로서”를 “주택(이하 이 조에서 “대상주택”이라 한다)으로서”로, “100분의 25를 2028년 12월 31일”을 “100분의 50을 202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무주택자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또는 혼인한 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로부터 7년 이내인 사람 및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할 예정인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혼부부”라 한다)이 인구감소지역등에서 대상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75조의5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 및 제5항”을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증여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증여하는 경우
2. 제6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은 자 중 혼인할 예정인 신혼부부가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한 경우

제177조의2제1항제2호 중 “제74조의2제1항”을 “제74조의2제1항, 제75조의5제6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5조의5(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① ~ ③ (생 략)	제75조의5(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무주택자 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을 <u>소유</u> <u>한 자가</u> 인구감소지역 또는	④ ----- ----- <u>소유</u> <u>한 자(이하 이 조에서 “무주택</u> <u>자등”이라 한다)</u>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 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	-----
호의2에 따른 <u>인구감소관심지</u>	-----
<u>역에서</u> 「지방세법」 제11조제	----- <u>인구감</u>
1항제8호에 따른 <u>주택으로서</u>	<u>소관심지역(이하 이 조에서</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u>“인구감소지역등”이라 한다)</u> ---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하	-----
다)로 취득하거나 신축하여 취	----- <u>주택(이하 이 조에</u>
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	<u>서 “대상주택”이라 한다)으로서</u>
<u>분의 25를 2028년 12월 31일까</u>	-----
<u>지 경감한다. 다만, 경감받는</u>	-----
<u>세액이 75만원을 초과하는 경</u>	-----
<u>우에는 75만원을 한도로 한다.</u>	-----
	--- <u>100분의 50을 2029년 12월</u>
	<u>31일</u> -----.

⑤ (생략)

<신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신설>

⑤ (현행과 같음)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무주택 자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또는 혼인한 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로부터 7년 이내인 사람 및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할 예정인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혼부부”라 한다)이 인구감소지역등에서 대상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

1.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증여하는 경우
2. 제6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 받은 자 중 혼인할 예정인 신혼부부가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한

